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 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정책보험국장 최윤배(6530)/ 보험팀장 김기성(6571)/ 담당 김윤아(6581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5-1170호

시행일자 2015. 12. 3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약제급여목록 정비」 관련 약제 전산심사 적용 안내**

1. 관련 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4810호(2015.12.30.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개정 고시(16년 1월 1일 시행)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의거 주성분 및 품목코드가 변경·추가된 약제 중 기존 전산심사가 적용되던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적용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(http://biz.hira.or.kr)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/알림방/심사알림방에 공지됨

붙 임 : 약제급여목록정비 전산심사 대상목록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